

제188회임사회

2001. 5. 22  
교육사회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#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

2001. 5. 22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안 및 회부일자

- 제안 : 2001년 5월 9일 제출
- 회부 : 2001년 5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교육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시설물의 사용범위(제2조)

-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대강당, 강의실, 분임토의실, 어학실,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관련 시설과 숙박 및 체육시설,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함.

○ 사용료(제6조)

- 시설물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함
  - 교육시설 : 대강당(10~15만원), 강의실(3~5만원), 분임토의실(2만원), 전산실습실(10만원), 어학실(6만5천원)
  - 숙박시설 : 생활관(3~5천원)
  - 체육시설 : 운동장(7만원), 테니스장(2만원)

○ 사용자의 책임(제9조)

-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함

○ 준용규정(제10조)

- 사용료의 징수·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름

## 5. 검토의견

○ 먼저 법령의 근거로는

상위법인 지방자치법 (제127조, 제130조),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(18조)의 위임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

○ 제정배경을 살펴보면

- 기존의 행정기관과 공무원 위주로 사용해오던 대강당, 어학실, 전산실습실 등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역주민과 단체, 협회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
- 대주민의 홍보차원과 지역주민, 민간단체, 협회 등과의 관계 유지로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다질 수 있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